

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85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자가 결산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현실화
 -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위원회 위원의 일비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”를 “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급기준) 위원회 위원의 일비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,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.	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,